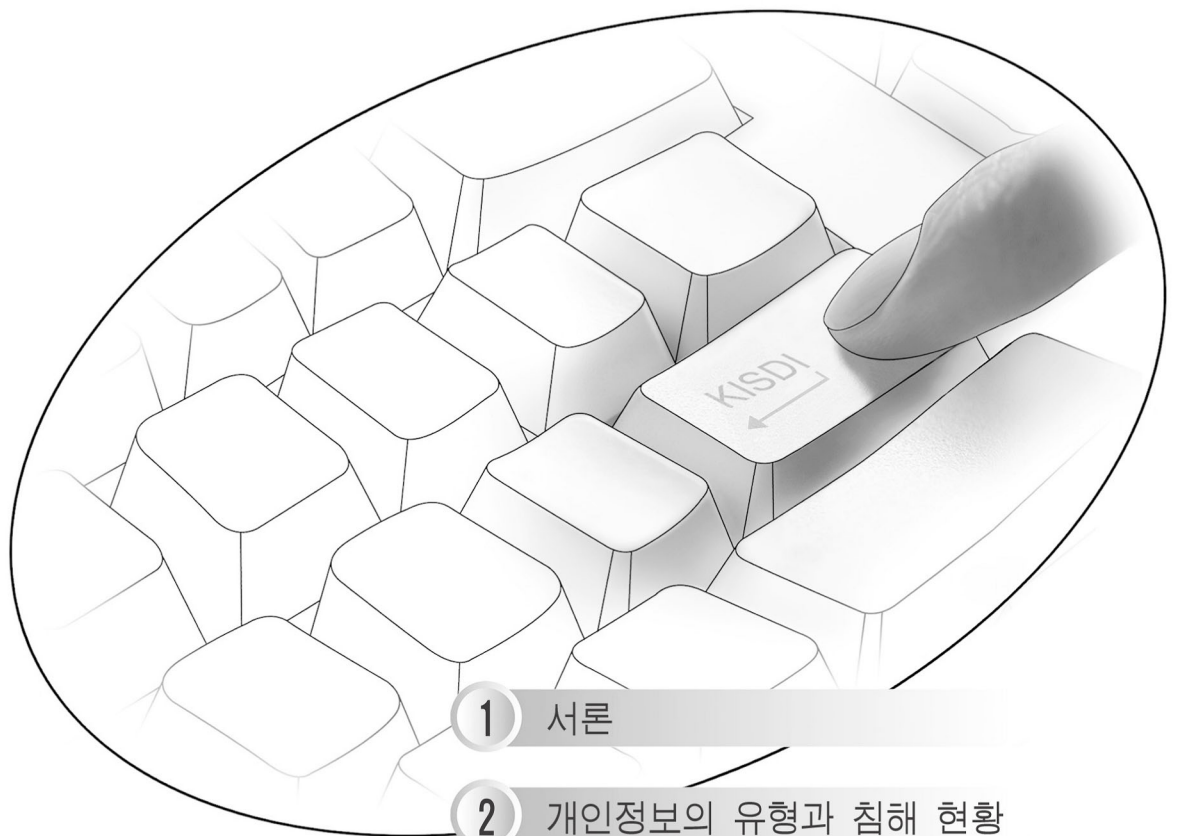


KISDI 이슈 리포트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 8. 25

조동기, 김성우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조동기

- infowell@kisdi.re.kr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미 University of Iowa 사회학 박사
-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저서 :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등

김성우

- southwest@kisdi.re.kr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저서 :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등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국가운영이나 사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가 수집·축적되는 범위가 광대하고 활용되는 방식이 고도화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라는 비가시적 측면과 경제적 피해라는 가시적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 온라인 상거래의 증대,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와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 환경의 전개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는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기술적·법제도적 대비가 요구되며, 이 리포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화된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로 정의되는 개인정보는 크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과 같은 정태적·기술적 정보와 병력기록, 주거기록, 통화기록 등과 같은 동태적·추론적 정보로 구분되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태적·추론적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의 차원과 수집목적 등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수집, 관리, 이용 등 정보활용의 다양한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부정이나 수집기관의 책임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공적 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이용의 투명성 보장이나 관리상의 보안성이 문제가 되고, 사적 기관의 경우에도 보안성이나 적합성의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정보화의 발전을 경험해 온 한국사회는 통일된 개인식별번호의 노출 증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의 취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미정착, 사적 기관에 대한 통제의 상대적 취약,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 PC 공동 이용 시설 확대와 유

료 온라인 콘텐츠·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저조하여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가 허술하고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일반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고, 기록문서의 부주의한 파기나 컴퓨터 시스템 교체시 저장된 자료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도 늘어나고 있다. 강력한 검색엔진이 개발되고 P2P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유료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도 늘어나고 있다.

OECD, UN, EU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에서 공정성, 보안성, 정보주체의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이한 법 제도를 가진 회원국들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도모해 왔다. 한국의 경우 OECD의 개인정보 보호 8원칙에 준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적용 범위의 한계, 국제적 정보유통에 대한 규범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제고,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한 대비,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서론

가)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국가운영이나 사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가 수집·축적되는 범위가 광대하고 활용되는 방식이 고도화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라는 비가시적 측면과 경제적 피해라는 가시적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 개인의 정치참여 확대, 복지혜택의 부여, 국방이나 납세 등 공적 의무의 부과 등을 위해 공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근대적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국가 행정 작용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대민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공적 기관에 의한 전자적 개인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도 개인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나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사적 기관의 이윤추구 동기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음
 - 신용카드나 전화번호의 발급, 회원가입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신용거래나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인지가 없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이용 자체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수집·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축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도화됨으로써 공적 및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빈발하고 있음
 - 특히 공적 기관의 효율성이나 사적 기관의 이윤추구가 개인의 안녕과 이해

관계를 크게 압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그 침해 자체가 인권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asset)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정보기술 고도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인권침해와 경제적 피해라는 두 측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 개념을 넘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능동적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정보인권 개념이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음
 - 온라인 거래가 증대하는 환경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신용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짐
 - 애버딘 그룹(AberdeenGroup)은 ID 절도(ID Theft)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3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약 2,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피해가 연평균 300%로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나)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침해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 온라인 상거래의 증대,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 환경의 전개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는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기술적·법 제도적 대비가 요구됨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터넷 이용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되고, 공적 및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2,627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000만을 넘고 있으며, KISDI(2002)의 연구에 따르면

-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인터넷 활용도가 늘어나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의 활발한 추진으로 전자결재율이 80%를 넘었고, 공공 전자조달 비율도 87%에 이르고 있음
 - 통계청(2002)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2년 현재 약 180조 원으로 성장하였고, 사이버 쇼핑몰의 시장 규모도 약 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성장하였음
-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정보화 진전 및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기회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전자정부 고도화는 개별 기관 시스템들의 통합·연계를 통한 실질적 업무 혁신에 의해 달성되므로, 단위 기관들의 행정효율성 제고 수준인 현 단계에서 향후 백오피스와 프론트오피스 모두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개별적으로 산재된 개인정보의 교차참조(cross-referencing)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일반화와 더불어 휴대폰이나 PDA를 이용한 무선 및 휴대 인터넷의 확산, 나아가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 환경의 전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새로운 차원을 가지게 됨
- KISDI(2002)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이동전화, 무선평출, TRS (Trunked Radio System), 무선 데이터를 포함한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3,260여 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가 성장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2)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무선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826만 명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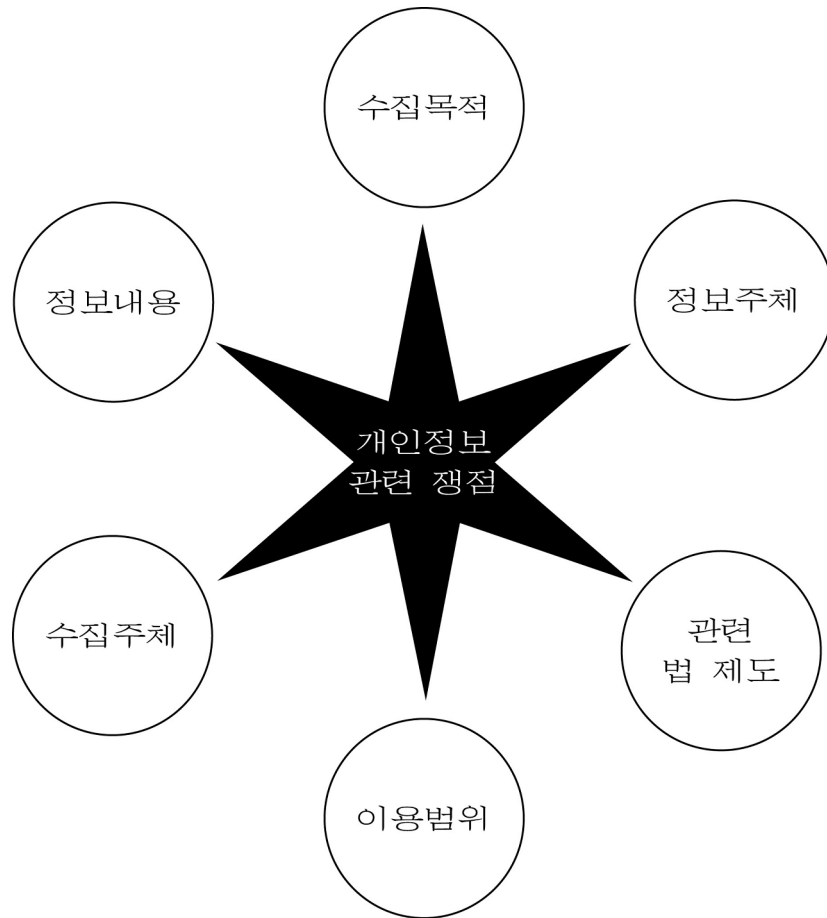
-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하에서는 단말장치의 개별적인 식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
- o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검색엔진이나 메일주소 수집기와 같은 자동화된 에이전트(agent)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무선통신 서비스의 확대나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의 전개와 더불어 기계적 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전이 증가되고 있음
- o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 모색,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 능력 강화, 법 제도적 대응 마련 등이 필요함
 - 특히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BT, NT 등 첨단 기술의 복합적 발달은 필연적으로 정체성, 인간권리, 사회도덕의 기존 개념에 급격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기술 고도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성에 소홀할 경우 사회 갈등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 o 정보화의 초기단계만 해도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는 가능성과 우려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 리포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로 정의되는 개인정보는 크게 정태적·기술적 정보와 동태적·추론적 정보로 구분되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태적·추론적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므로, 이용의 차원과 수집목적 등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개인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계된 모든 정보’로 규정하며, 이때 식별 가능한 자연인이란 ‘식별번호나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정체와 특정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인정보에 관련된 쟁점으로는 수집의 목적과 용도, 수집범위, 수집주체의 성격, 수집의 자발성과 정보주체의 참여, 관련 법규 등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요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쟁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개인정보 관련 쟁점〉

- 개인정보는 개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서부터 생체·의료, 교육, 고용, 재산, 정치적 성향, 사회참여, 문화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정태정보와 동태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정태정보는 개인의 현재 상태 또는 속성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성을 판별하는 기초 자료가 됨
 - 동태정보는 정태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 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추론적(inferential) 정보라고 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정태적·기술적 정보	동태적·추론적 정보
신체·의료	혈액형, 성별, DNA, 지문, 심신장애	병력기록, 성전환 기록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혼인상태	이혼기록, 주거기록
통신·위치	전화번호, 전자우편, 위치정보, 회원 ID, IP	통화기록, 접속로그, 이동기록
교육·훈련	학력, 학교성적, 자격증	상벌기록
고용·경력	직업, 병역상태	고용이력, 근태기록
재산·소비	부동산, 소득, 보험, 신용카드	신용정보, 구매행태
정치·사회	정당, 종교, 노조	전과기록
여가·생활	취미, 여가활동	대여기록, 관람기록

- 정보기술은 정태적·기술적 정보의 축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대한 동태적·추론적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고 구분된 정보의 교차참조(cross-referencing)를 통해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도 있음
 - 독립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매우 정밀한 새로운 정보가 구성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의 차원과 수집목적 등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아래의 예시는 이용의 차원을 시스템 관리, 단순접근, 의사소통, 거래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여 주고 있음

〈이용의 차원에 따른 개인정보의 내용 구분(예시)〉

이용차원	시스템 관리	단순 접근	상호작용	거래
수집목적	관리자 인증	없음	회원 또는 사용자 인증	본인 인증 및 과금
정보내용	ID, 비밀번호	없음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시	웹서버 관리	언론사 사이트	채팅 사이트	온라인 상품 구매
비고	실명 인증을 거친 ID	성인 콘텐츠 제외	성인 콘텐츠 제외	

나) 개인정보 침해 현황

개인정보 침해는 수집, 관리, 이용 등 정보활용의 다양한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부정이나 수집기관의 책임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공적 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이용의 투명성 보장이나 관리상의 보안성이 문제가 되고 사적 기관의 경우에도 보안성이나 적합성의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등 정보활용의 다양한 단계에서 보호의 성격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정되거나 정보관리자의 책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경우 개인정보의 다양한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음

〈활용단계 및 보호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구분	적극적	소극적
수집	민주성	정당성
관리	공개성	충실성 · 보안성
이용	투명성	적합성

- 적극적 성격의 개인정보 보호는 수집단계에서의 정보주체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민주성), 관리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공개성), 이용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인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이용되어야 함(투명성)
 - 소극적 성격의 개인정보 보호는 수집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이루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정당성), 관리단계에서는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자료갱신의 신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충실성을 확보하고(충실성),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이나 내부자의 불법적인 유출로부터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며(보안성), 이용단계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적합성)
- 개인정보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민간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수집 차원에서의 문제는 줄어들고 있으나 관리 및 이용 차원의 문제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청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적 동의 불이행’의 경우는 줄고 들고 있으나,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철회(회원탈퇴)·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의 경우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

〈유형별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 현황〉

침해 유형	2000	2001	2002	계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82	27	15	12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14	163	5	18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4	1	6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46	55	92	196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	8	23	32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1	1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1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1	1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			7	7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3	30	48	101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71	87	165	323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23	2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106	106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23	12	44	79
기타	5	2	9	16
합 계	266	388	541	1,198

(자료: <2002 개인정보보호 백서> 및 <2002 한국인터넷연감>)

- 위의 사례 유형들을 기타를 제외하고 활용단계 및 보호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활용단계 및 보호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건수(피해구제 신청 기준, 2002)〉

구 분	적극적	소극적
수 집	민주성(5)	정당성(122)
관 리	공개성(188)	충실성(3) · 보안성(30)
이 용	투명성(0)	적합성(184)

-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수집의 정당성, 관리의 공개성, 이용의 적합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보관리와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도 상당히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적극적 성격보다는 소극적 성격의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 성격의 정보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반대로 개인정보 침해의 기준에서 적극적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는 주로 수집기관이나 정보주체의 책임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수집의 정당성, 관리의 충실성과 보안성, 이용의 적합성 등의 소극적 성격의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었으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민주적인 수집, 공개적인 관리, 투명한 이용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조하는 적극적 성격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시되고 있음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가)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통일된 개인식별번호의 노출 증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의 취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미정착, 사적 기관에 대한 통제의 상대적 취약,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 PC 공동이용 시설 확대 및 유료 온라인 콘텐츠·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개인식별번호의 노출 증대

-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개인정보의 통합을 위한 기준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연결 및 데이터베이스간 교차참조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함
 - 거의 모든 행정정보는 주민등록정보를 기초로 작성되며, 민간부문에서도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회원가입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등록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등록정보는 온라인상에서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각종 문서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이 높음
 - 경찰청(2003)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현재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49건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침해센터(2003)의 2003년 1/4분기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정보주체 및 수집기관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저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정보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수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식이나 의지의 부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외면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약 96%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약 61%가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3)의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 투자대비 정보보호 투자율이 5% 미만인 기관이 약 66%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사적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통제나 감시의 상대적 취약

-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해 국가 우위였던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공적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전자주민증, 인터넷등급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등의 문제를 계기로 민감성이 높아졌으나, 최근 들어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적 기업에 대한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개인의 정치 참여와 복지혜택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주 일어났으므로, 국가의 행정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공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 및 시민사회의 견제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으나,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축적하고 있는 사적 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던 시민의 개인정보가 차츰 민간 기업들로 이전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이 보다 고급정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나친 요구는 개인정보의 산재, 관리능력 부실로 인한 유출 위험 가능성 증대의 위험이 있음
 - 미국의 금융 관련 기업들은 지난 5월 23일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고객정보 보안규칙(The Safeguards Rule)의 발효에 따라, 고객정보 침해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고객 정보의 안전과 비밀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정착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정보화의 추진으로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특히 인터넷의 일상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의 활발한 추진으로 전자적 개인정보의 축적과 연계가 늘어나고, 민간부문에서는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성장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으나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저조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으로 법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의적인 청부 해킹 등 고의적이고 대량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발하고 있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시급한 법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 한국사회는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나 규칙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에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연결망의 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사적인 연고를 통한 문제해결이나 정보획득이 추구되므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음
 - 사회적 연결망이 정보획득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통신 서비스 업체 종사자나 개인정보 관리자들과의 사적인 연결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 연결망의 잔존은 공적인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적인 방식보다는 사적인 연고를 통한 문제해결이 광범위하게 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 특히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의존성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조한 문화와 결합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킴

■ PC 공동이용 환경의 확산과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

- PC방의 활성화로 PC 공동이용 문화가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PC방의 PC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유출 위험이 높고, 악의적인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PC가 공동으로 이용되는 환경에서는 회원가입이나 성인 사이트의 성인 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PC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음
- PC방의 활성화와 함께 유료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성인 사이트 가입,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의 아바타(avatar) 아이

템 구입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유출이 빈발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아바타 서비스의 주된 사용자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그 범죄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우려가 있음

나) 침해 사례 분석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저조하여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가 허술하고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

- o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 회원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어벽의 설치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되어 많은 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보안업체에서 업체의 의뢰로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상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보안컨설팅 서비스를 해 주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시험 대상 사이트의 80% 정도는 몇 분 안에 뚫렸고, 대기업 사이트의 경우에는 2일 내외,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등과 같은 비교적 보안상태가 양호한 은행이나 증권사 사이트의 경우는 4일 정도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전문 해커 김모씨는 PC방에서 유명 결혼정보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30여 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종교, 연봉, 이성상, ID, 비밀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어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으나 피해를 입은 회사는 해킹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및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사업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기관의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경찰에서 관공서와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과정을 시연한 결과 비교적 용이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회사 전산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모씨는 국내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 15개 사이트에 불법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66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빼돌려 타인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정부기관이 범죄 수사나 연체세금 환수 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자료요청을 남발하고 있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금융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법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13개 기관의 연간 자료요청은 연간 300만 건이 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일반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폐기 자료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공공기관이 외부에 게시하는 공문이나 통지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관리 지침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총 위원장의 수배 전단에 적힌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한 고등학생이 성인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 회사원 박모씨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이 적힌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중대 본부에 항의한 사례도 있음
-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재활용지나 폐지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며,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저장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음
 - 모 중소기업에서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내놓은 중고 컴퓨터에서 이 회사 직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회사의 인사, 영업 등에 관한 기업정보가 그대로 들어있던 사례가 있었고, 신모씨는 한 비디오 대여점에서 버린 컴퓨터에서 2,0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750여 개의 이용자 계정을 만들어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음

강력한 검색엔진이 개발되고 P2P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유료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늘어나고 있음

- 검색엔진이나 P2P 서비스와 같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세계적인 전문 검색 사이트인 구글(Google)을 통해 모 유선방송 업체의 가입자 6,000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노출된 사례가 있고, 포털 사이트에 '회원명단'이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각종 동호회, 동창회, 학회 등의

회원 파일이 검색되고 이 파일들에는 이름, 성별, 소속학교, 직위, 전화번호, 결혼 여부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2P 서비스의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상세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이력서들이 다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색결과는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o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머니가 현금처럼 거래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아이템이 유료화되면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세이클럽(Sayclub)의 신고 창구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자체 신고센터인 '세이폴리스'를 사칭하거나 채팅 도중 사이버 머니를 올려주겠다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음
 - 한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 직원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접속하여 6,500여 명의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6,80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

OECD, UN, EU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에서 공정성, 보안성, 정보주체의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이한 법 제도를 가진 회원국들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도모하여 왔음

- OECD는 각국의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8원칙을 제시하였고, UN에서도 전산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10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EU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조준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함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
OECD(1980)	수집 제한, 질적 관리, 목적 명시, 이용 제한, 안전 확보, 공개성, 정보주체의 권리, 책임성
UN(1990)	합법성과 공정성, 정확성, 목적 명시, 보안성, 정보주체의 접근권, 차별금지, 예외부여권, 적절한 감독과 제재, 국가 간 정보유통의 원활화, 적용 범위의 포괄성
EU(1995)	수집목적의 제한성과 합법성, 자료의 질적 관리 및 보안, 적절한 제재수단 확보 및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기준 미달의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금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지침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참여 및 수집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OECD의 원칙이 수용되고 있으며, 초국적 정보유통의 증대에 따라 국가 간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내용과 개인정보의 범위 및 형태의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OECD의 개인정보 보호 8원칙에 준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적용 범위의 한계, 국제적 정보유통에 대한 규범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했고,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상거래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음
 -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20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2001)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건 및 분쟁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수한 온라인 사이트를 심사하여 ‘개인정보보호 마크(e-Privacy 마크)’를 부여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촉진해 왔음

- 그러나 현행 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의 정비와 추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교육정보 행정 시스템(NEIS)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개인정보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영역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제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한 대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국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민감성 제고

-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날로 확대되는 정보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저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성(sensitivity)의 제고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저조는 우리 사회에서 보안에 취약한 통신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미정착, 사회적 연줄망에 대한 의존성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OECD에서는 정보통신망 보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안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을 주창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호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 수집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함

■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강화

-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 고객관리,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표적 마케팅, 금융거래, 인사관리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는 경영전략상 높은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의 확산 및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나 전담인력의 확보가 부진하여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되어 있고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부정이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개인 신용평가 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연체정보 등과 같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 등과 같은 동태적·추론적 개인정보의 유출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 있는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수집목적이나 이용용도에 따라 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포괄적 또는 모호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마크 제도 등과 같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공적인 규제도 강화해야 할 것임

■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

-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 제공, 관리되는 경향이 높았으나, 개인정보의 체계적 집적과 활용이 증대하는

-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통제·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방식을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 프라이버시(e-Privacy)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정보관리의 주체가 자신이며 개인정보는 스스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고 그 관리의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가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의해 일괄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목적에 맞는 제한된 유형의 개인정보만을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거부절차를 명시하도록 해야 함
 - 유럽 각국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률 준수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에이전트,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기술 진화에 대한 대응
- 검색엔진이나 메일주소 수집기와 같은 자동화된 에이전트(agent)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확산이 늘어나고, 무선통신 서비스나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의 전개와 더불어 개인식별 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비인적 요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전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검색엔진이나 P2P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보여 주듯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 나 정보관리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무선 인터넷이나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은 단말장치의 개별적인 식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음
- o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무선 인터넷이나 유비쿼터스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환경도 발전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단도 더욱 다양화되고 치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포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에이전트에 의한 자동화된 ID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해독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통한 인증을 거치거나 검색 에이전트의 자동검색을 피하는 장치의 개발 등 기술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님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마련

- o 정보통신망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상거래 및 정보통신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모색되어야 함
- o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Privacy Round)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EU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EU에서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동참하고 IT 강국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